

프랑스의 선거 관련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대응 방안: 법률적 규제를 중심으로

최지선*

I. 문제제기

오늘날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agram)으로 대변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유튜브(Youtube)와 같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생산, 유통되고 있다. 다양한 주체가 자유롭게 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그러한 정보가 큰 장벽 없이 유통된다는 점에서 과거 매스미디어 중심의 일방향적이고 봉건적인 형태의 정보 생산 및 유통 방식과 비교할 때 정보의 민주화 시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들이 수없이 생산되고 유통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여론 형성에는 물론, 대의민주주의에서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 기간 중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 기간 허위정보(disinformation)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는 것은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있어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맥락 속에서 프랑스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앞장서서 대응 방안을 모색한 국가 중 하나다. 프랑스는 1881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일찌감치 마련한 언론법제 선진국으로서 정보의 생산과 유통, 정보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문제에 관해 오랜 기간 고민과 논의를 해 온 나라다. 그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 시기부터 허위정보로 인해 몸살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 정보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였다.

* 서강대학교 미디어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sophiajsc@gmail.com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가 허위정보 생산과 유통, 정보조작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서 마련한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법적 규제 내용과 법제도를 마련하는 과정 및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프랑스의 허위정보에 관한 법적 규제 현황

프랑스에서 2018년 허위정보¹⁾ 규제와 관련한 새로운 법이 채택되기 이전까지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법률 조항은 1881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과 선거법(Code électoral)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허위정보를 다루는 조항은 전자의 제27조, 후자의 제97조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1881년 법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다룬 조항이나, 형법의 일부 조항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허위정보 생산과 유통에 따른 결과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앞에 언급된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이나 선거법은 각각 1881년, 1964년 제정된 오래된 법률 조항으로서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가 발전하고 나날이 진실된 정보와 거짓된 정보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기에 부족하게 되었다.²⁾ 그리하여 새롭게 도입된 법률이 바로 2018년 정보조작 근절에 관한 법

1) 프랑스에서 ‘허위정보’를 지칭하는 표현은 다양하게 사용된다. ‘가짜뉴스’로서 ‘fake news’라는 영어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형태인 ‘fausses nouvelles’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허위정보를 지칭하기 위해 ‘가짜뉴스(fake news)’라는 표현이 초기부터 사용된 까닭에 있다. 오히려 ‘고의적으로 개인, 사회단체, 조직, 국가를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짓된 정보’(Unesco, n.d.)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허위정보(désinformation)’라는 표현의 사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참조한 프랑스의 허위정보 규제와 관련한 여러 법률 조항들도 ‘désinformation’이 아니라 ‘nouvelles fausses’, ‘fausses nouvelles’, ‘fausse(s) information(s)’ 등을 사용한다. 법률 조항에서 ‘désinformation’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désinformation’, ‘malinformation’, ‘mésinformation’ 등의 유사한 표현들이 프랑스어에 많이 있기 때문에 모호함이나 오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으로 여겨진다. 그 대신 ‘fausses nouvelles’, ‘fausse(s) information(s)’의 표현을 통해 거짓된 정보와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에 고의성, 조작, 해를 끼치는 목적 등의 수식어를 활용해 오늘날 합의된 의미로서 ‘허위정보(désinformation)’로 한정짓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허위정보(désinform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보고서에서는 ‘허위정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사용하되, 법률 혹은 헌법위원회 공식 문서 등을 인용, 참조하는 경우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fausse(s) information(s)’, ‘fausses nouvelles’를 ‘거짓 정보’, ‘가짜 정보’라고 번역 표기할 것임을 밝혀둔다.

2) 1881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 제27조는 1994년, 2000년, 2002년 세 차례 수정되었는데,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근본적인 부분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징역형을 폐지하거나 화폐단위가 프랑스에서 유로로 바뀌는 과정에서 벌금 금액을 수정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1881년 제정 당시 원칙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선거법 제97조 역시 1977년, 1989년, 2002년 수정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

를(La loi du 22 dé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이다.

1. 1881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La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프랑스는 언론에 관한 법률을 오래 전부터 제정한 나라 중 하나다. 제2공화국 시기인 1849년 언론을 다루는 최초의 법으로 언론법(loi sur la presse du 27 juillet 1849)이 제정되었다. 그 뒤를 이어 1881년 제정된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이 그 동안 수십 차례 개정되면서 약 140여 년 간 언론과 관련된 원칙으로서 그 역할을 해왔다. 1881년 법은 우리에게 ‘인권선언’으로 알려진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의 제11조 언론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왕정과 혁명 정부, 공화정 등 혼란의 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 했던 시도에 대응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때로는 명예훼손, 모욕죄, 정정보도청구권, 반론권 등의 내용이 부각되면서 어찌 보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법률은 언론 활동과 그 책임의 경계를 명료히 함으로써 방종이나 남용이 아닌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법률의 역사도 전술한 언론법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1849년 제정된 언론법 제4조에서 “악의적으로 생산, 재생산되는 거짓 뉴스에 대해 처벌”을 하는 규정을 둔 바 있으며, 이를 이어받은 1881년 제정된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공공의 평화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뉴스, 조작, 위조된 내용, 제3자가 거짓으로 주장하는 뉴스를 어떤 방법으로든 출판, 배포 또는 복제하는 경우, 4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에 관한 법과 유사하게 처벌의 수위와 화폐 단위를 조정하는 수정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역시 1964년 법 제정 당시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군의 규율이나 사기를 흔들거나 국가의 전투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한 사실에 대해 13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La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Article 27, 1881)

이 법률을 실제 기소, 처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허위정보의 배포와 관련하여 중요한 범죄 요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 허위정보를 출판, 게재하여야 한다. 즉, 그것이 종이 형태이든, 동영상 형태이든, 인터넷 매체를 통한 방식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배포, 게재 된 것이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둘째, 허위정보는 정확하고 정황적인 사실(un fait précis et circonstancié)에 기반해 그 거짓과 허위, 오류, 부정확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의 평화,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사적인 주체나 그 이익을 해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을 뜻한다. 넷째,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고의성은 해당 허위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것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가령, 사건을 과도하게 부풀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과장하여 보도하는 경우 허위정보로 처벌을 한 판례가 있다(Bem, 2019).

정보의 허위성은 물론 고의성 혹은 악의성까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법이 적용되고 처벌을 받은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 법률이 적용된 대부분의 경우는 언론사의 추측성 과장 보도였다. 예를 들어 1963년 11월 알제리 전쟁과 관련하여 마라케쉬(Marrakech)의 기지가 폭격을 위한 전투기의 출발 기지 역할을 했다는 당시 프랑스 옵제르바퇴르(France Observateur)의 기사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프랑스와 모로코의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고, 공중의 안녕을 해할 수 있다며 이 법률을 적용시켜 유죄로 판결하였다. 또, 2000년 12월 낭테르 법원은 파리 외곽의 청년들과 경찰의 대치에 관한 사건과 그 보도에 관해, 언론사가 실재하지 않는 장면을 만들어 보도하여 파리 외곽 지역에서 경찰을 쫓는 증오에 찬 청년들의 존재를 독자로 하여금 믿도록 하였다고 유죄 판결을 한 바 있다(Pierrat, 2019). 그간의 판례를 통해 이 법 조항은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적용되는 법이며, 최근의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생산, 유통되는 허위정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허위정보 생산과 유통은 그 생산자 개인을 식별하기도 어렵고, 빠르게 대량 유포된다는 점에서 유통에 관련된 모두를 처벌하기도 어렵다. 다시 말해, 1881년 언론의 자

유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언론사 혹은 언론인이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여 악의적으로 허위보도를 한 경우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규제 조항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개인들에 의해 생산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량으로 유포되는 허위정보에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허위정보가 때로는 개인의 명예훼손을 침해하거나 개인에게 모욕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을 다루는 법률 조항 역시 허위정보가 파생한 결과에 대해 적용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1881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예훼손(제29조~제32조, 제35조)³⁾을 다루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허위정보를 다루는 새로운 법률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어떤 사실에 대하여 개인 혹은 법인을 비난함으로써 그의 명예나 평판을 침해하는 모든 주장과 비난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장 혹은 비난을 직접 공개하거나 인용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은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는 당사자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관련 담화, 선전, 헐박, 글, 인쇄물, 벽보, 게시물에 의해 그 당사자에 대한 추론이 가능할 경우에 처벌 가능하다.

비난을 함축하지 않은 모욕적인 모든 표현, 의심하는 언어, 욕설은 중상이다.” (La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Article 29, 1881)

그러나 특정 개인과 관련된 허위정보는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모든 허위정보가 항상 개인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면, 허위정보의 해악이 반드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조항으로 허위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

3) 제29조는 명예훼손의 정의와 범죄요건을 제시하고 있고, 제35조는 명예훼손의 진실성을 다룬다. 제30조는 법원, 군대, 행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제31조는 대통령 정부, 상·하원의원, 공무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 제32조는 사인과 사적 단체 등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룬다. 각각의 대상에 따라 그 처벌의 내용이 차이가 난다.

2. 선거법, 형법 등 기타 관련 법령

1881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허위정보와 관련된 법 조항을 선거법(Code électoral), 형법(Code pénal),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2004년 6월 21일 법률(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선거법 제L97조(Code électoral Article L97, 1964)는 “거짓 뉴스, 중상모략 또는 기타 사기 책략을 통해 투표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한 명 이상의 유권자로 하여금 기권을 결정하게 하는 경우 1년의 징역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며 허위정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법이 적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드물다(최지선, 2018). 그 이유는 허위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투표 결과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실제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형법 제322-14조(Code pénal Article 322-14, 1994)에서도 “사람들에 대해 파괴, 손상 또는 위협의 악화를 믿게 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공표, 전달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였다면 2년의 징역형과 30,000유로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재해가 발생하고 응급구조의 불필요한 개입을 유발할 수 있다고 믿도록 하는 거짓 정보를 공표, 전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사람에 대한 파괴, 손상, 악화 등을 믿도록 하는 허위정보나 재해나 응급구조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상을 주는 허위정보로 허위정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형법 제411-10조(Code pénal Article 411-10, 1994)는 “외국 세력, 외국 기업, 단체 또는 외국의 통제 하에 있는 외국 세력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을 해치거나 실수를 유인할 수 있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7년의 징역형과 10만 유로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허위정보 제공의 주체가 외국의 세력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법률로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2004년 6월 21일 법률 제6조 I-8항(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Article 6 I-8, 2004)에서는 사법 당국이 약식 절차 또는 요청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

은 엄밀히 ‘허위정보’보다는 일반적인 범위를 모두 아우르는 조항이며 명료성이 떨어지는 조항이다.

3. 2018년 정보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

위와 같이 프랑스의 법률 시스템에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선거법, 형법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허위정보를 다루는 조항들이 있다. 그러나 각각의 조항들은 그 자체로 제한적이거나, 현실적으로 범죄 입증 가능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문화(死文化)되어 오늘날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허위정보를 막아 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그 사이 프랑스 사회는 2016년 미국 대선,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2017년 프랑스 대선 등 민주주의에서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거짓된 뉴스(fake news)’의 대대적인 생산과 유포,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들을 목도하였고, 허위정보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La loi du 22 dé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1) 법률의 내용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은 크게 다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선거법 개정을 위한 조항, 둘째, 방송법 수정을 위한 조항, 셋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사항을 다루는 조항, 넷째, 미디어 교육에 관해 교육법을 개정하는 조항, 다섯째, 해외영토에서 법률이 적용되는 방식에 관한 조항이다. 새로운 법률이 그 자체로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의 법률 개정이 기존의 관련 법률을 수정, 보완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 역시 그 자체로 새로운 내용을 담은 법률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관련된 기존의 법률(선거법, 방송법, 교육법 등)에 일부 문구나 내용을 추가, 삭제하는 조항으로 구성된 것이다.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

4) 해당 법률 내용과 관련해 이 연구보고서 마지막에 〈부록〉으로 연구자가 번역한 번역본을 제공함

첫째,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지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소비법 제L111-7조에서 정의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공익과 관련된 정보나 토론과 관련해 투명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익적 정보 혹은 토론에 관련된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광고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신원, 상호, 회사 소재지, 사업 목표 등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광고비가 100유로를 넘어선 경우 광고비도 공개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징역 1년과 75,000유로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선거기간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가 허위정보로 의심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제소할 수 있으며, 허위정보의 유포 금지 여부와 같은 조치에 대해 판사는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둘째, ‘방송법’이라 불리는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개정을 통해 시청각최고위원회(CSA)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허위정보 생산과 유포를 감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시청각최고위원회(CSA)는 선거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는 허위정보가 유포된다고 판단되면 방송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 내에서 방송을 허가받은 외국의 방송 사업자에게도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셋째, 선거법에 적용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의무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이는 선거 이외의 기간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요구되는 협조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선거의 진정성을 해치는 허위정보를 이용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언론사와 방송사의 콘텐츠를 홍보하고, 허위정보를 대량 유포하는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 또, 콘텐츠의 성격, 출처, 유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미디어와 정보 교육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이러한 활동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매년 작성하여 시청각최고위원회(CSA)에 제출해야 한다.

넷째, 교육법 개정을 통해 미디어 교육에서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별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프랑스 본토와 세부적인 법, 제도의 적용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프랑스 해외영토에 대한 법 조항 수정을 다루고 있다.

(2) 법률의 적용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건이나 기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이나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된다.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위한 조건은 2019년 1월 30일 시행령(Décret n° 2019-53 du 30/01/2019 publié au JO du 31/01/2019 désignant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et la cour d'appel compétents pour connaître des actions fondées sur l'article L. 163-2 du code électoral)과 2019년 4월 10일 시행령(Décret n° 2019-297 du 10 avril 2019 relatif aux obligations d'information des opérateurs de plateforme en ligne assurant la promotion de contenus d'information se rattachant à un débat d'intérêt général)을 통해 결정되었다.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에는 선거기간 동안 프랑스 영토에서 일정 정도의 접속 수를 넘어서며 공익과 관련된 토론과 연관된 정보를 게재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2019년 4월 10일 시행령에 따라 '일정 정도의 접속 수'를 월 방문자 수 5백만 명 이상, 광고비 100유로 이상(세금 제외)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 1월 30일 시행령에 따라 허위정보 제소에 관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을 파리 법원(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으로 지정하여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선거법 개정 조항 제L.163-2조가 적용되는 선거기간 중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정보에 대한 제소와 판결로써 정보의 게시가 중단되는 부분이다. 이 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허위정보가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둘째, 인위적이고 대량으로 배포되어야 한다. 셋째, 허위정보가 공공의 질서와 선거의 진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1881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의 '허위정보' 정의를 따르고 있다(Gouvernement.fr, 2021).

III.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관련 쟁점 및 논의

1. 허위정보 및 정보 조작 근절 대응 방안의 필요

프랑스의 허위정보 및 정보 조작 근절에 대한 대응은 법률로 제정되기 이전부터 논의가 되어왔다. 특히, 2017년 4월 대선을 앞두고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었는데, 이는 프랑스 대선에 앞서 치러진 미국 대선 및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에서 허위정보의 폐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미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관련된 여러 가짜 뉴스, 교황의 특정 후보 지지에 관한 허위정보 등이 진실된 뉴스에 비해 더 많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허위정보가 프랑스 대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허위정보의 주된 유통 경로로 지목된 페이스북과 구글은 프랑스의 유수 언론사들 - 일간지인 르 몽드(Le Monde), 리베라시옹(Libération), 렉스프레스(L'Express), 뱅미뉘뜨(20 Minutes), 통신사 아에프페(AFP), 뉴스 전문채널인 베에프엠-떼베(BFM-TV), 프랑스 공영방송사 프랑스 텔레비지옹(France Télévisions), 프랑스 해외방송법인 프랑스 미디어 몽드(France Médias Monde) - 과 함께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팩트체크(fact-check)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최지선, 2017).

허위정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적인 대응 방안으로 팩트체크 시스템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위정보의 범람을 막는 것이 어려워지자 2018년 1월 마크롱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안 채택을 소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바하마에 비밀 계좌가 있다는 허위정보로 시달리기도 하였다. 당시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허위정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 도입 수준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최지선, 2017). 이에 2018년 3월 리샤르 페랑(Richard Ferrand)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원에 초안이 제출되었고, 이후 상원의회에서 법안 수정을 요청하며 반려하는 등 논의를 거듭한 끝에 2018년 말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대선을 치르면서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이 거의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허위정

보를 규제하는 주체, 방식을 결정하는 어려움은 물론, 이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2018년 상원은 두 차례나 법안을 부결시켰다. 최종적으로 여당인 전진하는 공화국(LREM) 주도로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었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이 법안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내왔다. 또, 일부 상원의원들은 프랑스가 2018년 당시 유일하게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나라라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허위정보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 조항을 만드는 상황이 프랑스를 ‘리더’로 만들기보다는 ‘고립’시킬 것으로 생각했고 국내법 차원에 앞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Rees, 2018. 11. 7).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이 양원을 통과한 후, 공표 전인 2018년 11월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에 회부⁵⁾되었는데, 당시 일부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이 표현의 자유 침해로 주요 근거로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헌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보 조작 근절법이 발효되었다.

2. 법률 제정 과정 중 쟁점⁶⁾

(1) 특정한 개념 정의의 부정확성 문제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허위정보’의 개념과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였다. ‘허위정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과도하거나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경우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허위정보’에 관한 개념의 모호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근본적 이익’, ‘공공질서 수호’ 등 법률에 포함된 여러 개념들이 부정확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헌법위원회에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한 상·하원의원들은 우선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허위정보’와 관련한 개념 정의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첫째, 허위성 판별에 앞서 문제가

5) 프랑스의 헌법 제61조에 따라 조직법(Les lois organiques)은 공표 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헌법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법의 하나로 발의된 2018년 정보조작 근절에 관한 법 역시 공표 전인 2018년 11월 상원의원 60여명에 의해 헌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6) 헌법위원회에 제기된 상·하원의원들의 문제제기와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입법을 담당하는 상·하원의원들과 법률가들이 전문가의 관점에서 논의한 쟁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 ‘공익에 관한 토론과 연관된 정보’라는 개념이 명료하지 않고, 이로 인해 범죄 및 처벌의 합법성의 원칙⁷⁾이 무시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1789년 인권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제8조,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범죄와 처벌에 대해 법률로서 충분히 정확하고 명료하게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 개념이 부정확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투명성 의무 역시 1789년 인권선언 제4조가 보장하는 비즈니스 수행의 자유에 대해 위헌적인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정보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이 선거기간이라는 특정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공익에 관한 토론과 연관된 정보’ 역시 선거 운동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범죄 및 처벌의 합법성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선거기간이라는 제한적 기간에 국한되어 적용된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사업의 자유 역시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Conseil Constitutionnel, 2018). 둘째, ‘허위정보’ 개념의 모호성이다. 이 법안을 반대했던 상·하원의원들은 패러디나 고의성이 없는 단순 오도 혹은 잘못된 의견이 허위정보로 판단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방송의 경우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정보나 실수, 추측까지 허위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Conseil Constitutionnel, 2018). 실제로 의도성을 갖는 허위정보와 패러디나 잘못된 의견과 같이 고의성이 없는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헌법위원회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성’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 ‘허위정보’의 불명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객관적인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만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 패러디, 부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 단순 과장과 같은 정보는 허위정보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인위적으로 혹은 자동화된 방식으로, 대량으로, 고의로 유포되어야 한다는 조건 또한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Conseil Constitutionnel, 2018). 의견이나 느낌, 생각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부정확성, 허위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 정부는 ‘허위정보’의 기소와 처벌의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 정보의 공개성, 정보 생산과 유포의 고의성/ 인위성/ 대량성, 선거의 진정성을 해칠 위험성 - 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7) 우리나라의 죄형법정주의와 유사한 원칙임

‘허위정보’의 개념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러 의원들은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 제6조의 ‘공공질서 수호’, ‘국가의 기본적 이익’ 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이 역시 범죄 및 처벌의 합법성 원칙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공공질서 수호’, ‘국가의 기본적 이익’과 같은 개념은 입법 과정이나 판결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 바, 부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일축하였다(Conseil Constitutionnel, 2018). 이 밖에도 법안에 반대하였던 의원들은 선거의 진정성을 해칠 위험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의 모호성, 규제 대상이 되는 정보의 조건의 모호성과 함께 판사가 허위정보의 유통을 금지시킬 목적으로 선언할 조치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Conseil Constitutionnel, 2018).

(2) 정보의 허위성 판별의 문제

정보의 허위성과 허위정보로서의 해당 정보가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판별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콘텐츠의 유통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적지 않았다. 애초에 법안은 정보의 허위성 판별 주체를 판사와 법원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문제가 되는 콘텐츠의 허위성을 판별할 경우 정보와 사상을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최지선, 2018). 그 대신 판결을 통해 결정하자는 의미이다.

정부의 사상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난은 피했으나 법안을 반대한 상원의원들, 헌법위원회에 합헌여부 확인을 요청한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정보의 허위성, 해당 정보가 선거의 진정성을 해칠 위험 여부를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지 전문성 문제를 지적했다. 언론학자인 아르노 메르시에르(Arnaud Mercier)는 “이것은 저널리즘이라는 전문적 영역으로 판사의 능력을 발휘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Carasco, 2018. 11. 22).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담 법원과 판사를 지명하여 판결하도록 함을 강조하고 있다(Gouvernement.fr, 2021). 전술한 바와 같이 법 적용을 위한 시행령을 통해 파리 법원을 전담 법원으로 하고 있다. 사실 1881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7조 역시 허위정보의 생산, 유포에 관해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새로운 법과 관련해 판사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반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편,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와 별도로 시청각최고위원회(CSA) 역시 방송사의 방송 콘텐츠 혹은 방송사가 운영하는 다른 미디어에 게재되는 콘텐츠에 대해 허위정보를 판별하는 주체가 되었다며, 시청각최고위원회(CSA)가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관여하게 되어 과도하게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방송법을 수정하는 내용을 다루는 제5조~제10조까지의 내용은 기존에 방송 규제 기관인 시청각최고위원회(CSA)의 역할과 기능을 허위정보에 관한 내용까지 확장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특히, 헌법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한 의원들은 제5조, 제6조와 관련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대해 충분한 절차적 보장 없이 사전 승인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승인을 거부하는 것, 방송 중지 결정 자체가 징계가 되고, 그러한 결정에 대해 조정 가능성도 없으며 유예되거나 항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방어권, 항소권, 형벌의 개별화 원칙이 무시되었다는 주장이다. 또, 외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법인이나 외국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다르게 취급하였다는 점이 법 앞에서의 평등 원칙을 무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Conseil Constitutionnel, 2018). 이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시청각최고위원회(CSA)가 방송사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고 방송 중단 결정 역시 행정 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담당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므로 항소권이나 방어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승인 거부나 방송 중지가 징계의 성격을 갖는 제재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시청각최고위원회(CSA)가 결정하는 것이 최종 결과가 아니라 시청각최고위원회(CSA)는 허위정보를 유포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사에 대해 법원에 방송 승인 거부나 중단 결정을 위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헌법위원회는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입법자가 다른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공익을 위해 평등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외국의 세력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미디어 콘텐츠가 국가의 불안정성을 시도하는 특수한 중대함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합헌이라고 보았다(Conseil Constitutionnel, 2018)⁸⁾. 실제로 시청각최고위원회

8) 사실 헌법위원회의 합헌 결정과 무관하게 시청각최고위원회(CSA)의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 중 하나이다. 방송 미디어에 대한 규제 기관인 시청각최고위원회(CSA)의 감시와 규제 권한을 인터넷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수 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이미 십 여 년 전부터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시청각최고위원회(CSA)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통신규제기관인 우편통신규제청(L'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 Arcep)과 시청각최고위원회(CSA)와의 통합이 자주 논의되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최

(CSA)는 2020년 인터넷에서의 혐오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법(Loi du 24 juin 2020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과 최근 하원의회를 통과한 소위 ‘분리주의 대처 법’이라고 불리는 공화국 원칙 존중에 관한 법(Loi confortant le respect des principes de la République)에서 해당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경고, 또는 연 수익 4~6%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시청각최고위원회(CSA)가 징계 성격의 제재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보의 허위성 판별, 정보의 영향력,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과 관련한 주체의 문제와 함께 한 축을 이룬 또 다른 비판은 허위정보에 대한 결정과 조치에 대한 판결이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법안에 반대해왔던 여러 사람들은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보의 허위성을 판별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영향력까지 숙고하기에 너무 짧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이 법안을 반대했던 의원들은 제6조와 관련하여 시청각최고위원회(CSA)가 방송 중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방송사 관계자가 48시간 이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하였다. 즉, 올바른 사법행정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목적과 권리 보장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Conseil Constitutionnel, 2018). 헌법위원회는 ‘48시간’이라는 시간에 대해 의원들이 위헌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으나 제6조에 관해 실제 방어권 보장에 대한 위반은 아니므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Conseil Constitutionnel, 2018).

(3)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관한 논의

대부분의 언론, 정보의 생산이나 유통과 관련된 법률이 그러하듯이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 역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의 충돌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크리스티앙 자

근 시청각최고위원회(CSA)와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보호 기관인 아도피(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Hadopi)와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어 시청각최고위원회(CSA)의 권한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콥(Christian Jacob), 장-뤽 멜랑송(Jean-Luc Mélenchon), 마린 르 펜(Marine Le Pen)등 야당 정치인들은 이 법률이 “사상의 검열”, “정보 통제 시도”, “자유침해”라며 비판하였다(Jublin, 2019. 4. 6).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앞서 제시된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우선, 일부 상·하원의원들은 판사가 48시간 안에 정보의 허위성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선거의 진정성을 해칠 위험’을 판단하는 어려움, 재판 절차의 도구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Conseil Constitutionnel, 2018). 근본적으로 명료성이 떨어지는 법률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자기검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법안에 반대한 상·하원의원들은 정치적 논쟁이나 선거 운동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이 법률이 자기검열을 통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대중에게 해를 입히려는 고의적 의도가 입증되지 않은 발언의 확산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Conseil Constitutionnel, 2018).

이러한 주장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라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이 제한적 조건 하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위원회는 첫째, 이 법률이 선거기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선거기간에 특히 보장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지만 동시에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공공의 질서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이고 공정한 비밀 투표라는 선거의 진정성의 원칙을 위해서 이 법률은 선거기간에 한정하여 온라인상에서 투표 행위를 오도하고 조작할 수 있는 정보가 대량으로 유포됨으로써 선거의 진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특정한 허위정보의 유포를 중단할 수 있도록 절차와 선거의 진정성의 원칙을 존중하고 선거와 관련된 토론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본 것이다. 둘째, 콘텐츠를 대량으로 쉽게 배포하고 변형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공개된 콘텐츠에 한정 짓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선거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는 성질의 부정확하고 오해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의견, 패러디, 부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 단순 과정과 같은 정보는 허위정보로 여기지 않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 고의

성을 가지고 인위적, 자동적, 대량으로 유포되는 경우에만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주장이나 비난은 명백히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재판에 회부된다고 보았다. 넷째, 오히려 재판 절차에서 판사가 허위정보의 유포를 중단하기 위해 모든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의사소통의 자유를 가장 적게 침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판단했다(Conseil Constitutionnel, 2018).

제5조와 관련해 시청각최고위원회(CSA)가 새롭게 갖는 권리와 관련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대해 사전 행정 승인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 ‘공공질서 수호’, ‘국가의 기본적 이익’과 같은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위원회는 표현의 자유가 무한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 국가의 기본적 이익이나 공공질서, 헌법적 가치와 양립될 수 있는 수준에서 보장되는 자유라는 점에서 이 법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시청각최고위원회(CSA)가 갖는 방송 정지에 관한 재판 요청 권한은 전국 단위 선거의 선거기간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허위정보로 인해 시민들이 기만당하거나 투표권 행위 시 조작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이를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진정성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Conseil Constitutionnel, 2018).

(4)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 부여

입법을 반대한 상·하원의원들은 해당 법률 제11조에서 명시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가 과도하다는 입장이었다. 즉,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플랫폼을 통해 유포된 정보의 허위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이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허위정보라는 개념을 광범위한 의미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것이 사업을 할 자유, 정보에 대한 권리, 법률의 접근성과 명료성, 사상과 의견의 다원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목적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선거의 진정성 원칙을 위해 적용되는 조항이며 허위정보의 부정확성 주장에 대해서도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 여러 조건 하에 엄격히 적용한다는 점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 역시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내용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규

제의 기준을 설명하지 않고 콘텐츠를 검열하는 것보다 법률로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더욱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Gouvernement.fr, 2021).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허위정보를 게시하는 개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최초 게시자 혹은 정보 생산자를 분별하기도 어렵고, 유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더 불분명할 수 있으며, 결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쟁에서 더 자유롭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5) 기타 논의

이 밖에도 일부 의원들은 이 법이 왓츠앱(WhatsApp)과 같은 개인 메신저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허위정보의 유포를 근절하는 데에 한계가 많은 법이라고 비판하였다. 왓츠앱은 브라질 대선에서 허위정보 유통 통로가 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Rees, 2018. 11. 7). 우리나라에서도 선거기간 중 카카오톡 메신저와 같은 개인 메신저 앱을 통해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선거나 후보자 관련 정보들이 대량으로 확산된 바 있다. 그 중에서 허위정보도 다수 유통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왓츠앱도 대량으로 허위정보가 유통되는 통로가 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이 이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도 새로운 법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았다. 2019년 5월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두고 트위터(Twitter)는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능력이 없다며 내무부의 선거 독려 캠페인 ‘#네, 나는 투표합니다(#OuiJeVote)’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트위터 측은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공익과 관련된 토론에 대한 여러 정보를 투명하게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온라인 플랫폼이 선거기간 동안 정치적 캠페인을 게시하는 조건에서 발생하는 의무다. 즉, 온라인 플랫폼이 정치적 캠페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면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지만 만일 캠페인을 게시하지 않으면 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트위터 측은 자사 게시물 조건 규정과 관련해 유럽의 일부 국가에 적용하는 정치적 메시지 게시 제한 항목에 프랑스를 포함시키며 캠페인 게시 거부가 가능하고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러한 트위터의 선거 독려 캠페인 게시 거부에

대해 프랑스 정부홍보실(le Service d'Information du Gouvernement)⁹⁾은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 운동이 아닌 정부의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이 큰 투표 독려 캠페인의 게시를 거부하는 것은 트위터 측이 2018년 법률에 대해 맞출 의향이 없다는 의사 표시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Rees, 2019. 4. 3). 결과적으로 트위터는 며칠 뒤 결정을 번복하고 해당 투표 독려 캠페인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지만,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어떠한 입장인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IV.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의 적용 사례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이 통과한 후 가장 먼저 적용되었던 선거는 앞서 트위터의 선거 독려 캠페인 게시 거부 사건이 발생하였던 2019년 5월 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였다. 이 시기에 유럽의회 의원인 마리-삐에르 비유(Marie-Pierre Vieu)와 삐에르 우줄리아스(Pierre Ouzoulis)는 2019년 5월 1일 내무부 장관인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Christophe Castaner)의 트위터 게시물에 대해 허위정보라며 제소를 하였는데, 허위정보 재판을 담당하는 파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당시 내무부 장관의 트윗(tweet)은 “노란 조끼 시위 도중 피티에-살페트리에르 병원(Pitié-Salpêtrière)이 공격을 받았다. 간병인을 공격했고, 간병인을 보호하는 경찰도 다쳤다”는 내용이었다. 문제 제기를 한 두 의원은 이 트윗이 공포와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폭력적인 분위기를 민도록 하여 유럽의회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해당 트윗이 ‘공격’, ‘다치다’라는 용어를 사용해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실제 시위대가 병원에 침입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부정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정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인위적이고 자동적이며 대량으로 고의를 가지고 유포한다는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판사는 “과장된 용어를 사용한 게시물이지만 여러 언론이나 인터넷 정보들이 실제 그러한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므로 전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논쟁을 흐리지 않았고, 조작 위험 없이 유권자들이 명확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고 기각의 이

9)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정부 홍보를 담당함

유를 설명했다. 판사는 기각과 함께 제소를 한 두 의원에게 재판비용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였다(Tribunal de grand instance de Paris, 2019). 이 사례는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판사가 허위정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패소한 원고 측에 재판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선부른 허위정보 제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선거기간 동안 허위정보 유포와 관련해 제소가 이루어진 사례는 상기 언급된 사례가 유일하다. 허위정보 재판을 전담하는 파리법원에서도 2018년 12월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이후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허위정보 관련 소송과 재판이 많이 밀려들 것을 대비하기도 하였는데, 실제 제소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Mounier, 2019). 프랑스에서 허위정보가 크게 문제시 된 것은 역시 2017년 대통령 선거였다. 2016년 미국 대선에 이어 이듬해 봄 프랑스 대선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허위정보가 기승을 부렸고, 허위정보에 시달린 마크롱 대통령이 2018년 1월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만 보아도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허위정보 문제가 크게 불거졌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12월 법이 발효된 이후 2019년 유럽의회 선거, 2020년 지방선거가 있었지만 법률의 존재, 허위정보의 문제와 인식에 대한 공론화,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주요 소셜미디어에서 허위정보 생산과 유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힘입어 2017년 대선과 같은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또, 유럽의회 선거, 지방선거는 상대적으로 후보자 인물에 덜 주목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실질적으로 해당 법률의 실효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허위정보의 제소, 허위정보로 적발되어 정보가 삭제되거나 유통이 중단되는 판결과 별개로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매월 500만 명 이상의 접속자수를 기록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시청각최고위원회(CSA)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일리모션(Dailymotion),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야후(Yahoo), 마이크로소프트 Bing(MS Bing), 스냅챗(Snapchat), 트위터(Twitter), 유니파이(Unify), 버라이즌(Verizon), 웨비디아(Webedia), 위키페디아(Wikipédia), 유튜브(Youtube), 오페미낭(Aufeminin), 독티시모(Doctissimo), 인스타그램(Instagram), 링크딘(LinkedIn) 등 16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조건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는 자신들의 의무사항 이행

에 관한 2019년 선언문을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 중 11개 기업뿐이었다(CSA, 2020).

선언문 제출에 앞서 시청각최고위원회(CSA)는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2020년 4월 15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을 위한 권고 사항(Recommandation n° 2019-03 du 15 mai 2019 du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aux opérateurs de plateforme en ligne dans le cadre du devoir de coopération en matière de lutte contre la diffusion de fausses informations)을 제공하였고, 2020년 4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선언문에 포함될 내용의 뼈대를 제시하고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특히, 2020년 4월 경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스냅챗, 위키백과, 구글 등과는 공청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청각최고위원회(CSA)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선언문을 평가한 보고서를 2020년 7월에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들이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자들이 제공한 정보들이 충분하지 않고, 자세하지 않은 점, 각각의 사업자마다 정보의 제공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더욱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CSA, 2020).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허위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는 신고 과정을 보다 간결하게 하고 이용자들이 신고 이후 처리 과정과 절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또, 신고가 접수된 사례와 처리한 사례 등을 수치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세부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의 알고리즘 처리,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에서 충분히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중심이 되고, 허위정보 전담 인력이나 자원과 같이 접근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는 보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CSA, 2020).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2018년 법안에 반대하던 의원, 정치인, 전문가들이 우려하였던 문제 - 허위정보 개념의 부정확함으로 인한 해석의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시청각최고위원회(CSA)의 과도한 권한 등 - 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사실과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봇에 의해 자동적으로 유포되지 않으면 과장된 용

어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므로 허위정보로 간주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 시청각최고위원회(CSA) 역시 의무이행에 관한 선언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선언문의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법률 역시 1881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 제27조, 선거법 제97조와 같이 무의미한 법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Rees, 2019. 5. 22).

V. 결론

프랑스의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의 핵심이자 궁극적 목적은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률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기간에 한정지어 신속하게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보호라는 목적으로 프랑스 사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언론사 간의 협력을 통한 팩트체크라는 자정적 노력을 시도해보았음에도 한계를 느끼고,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및 권리와 허위정보 규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소한으로 ‘선거기간’으로 한정지어 찬반 논란을 거치며 어렵게 법률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포와 관련해 다른 나라와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프랑스의 새로운 허위정보 규제 법률은 오랜 찬반 논쟁을 거쳐 입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허위정보’의 개념은 가장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를 피하기 위해 여러 조건들을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 판례에서도 보았듯이 ‘사실과 연관’된 ‘과장’된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판사 개인의 몫인 것이다. 이러한 법적 개념의 모호성 문제와 함께 법의 강제성 역시 약하다는 점도 여전히 법의 유효성 문제의 근거가 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과된 의무사항의 이행과 이행에 대한 선언문 제출과 관련해 시청각최고위원회(CSA)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선언문의 정보 수준이나 제출 여부 자체를 강제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주장하듯이 온라인 플랫폼의 모호하고 공개되지 않은 기준에 따른 자율규제보다 이 법적 규제가

얼마나 더 나은지 알기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이 법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회의자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프랑스의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정보의 생산과 규제와 관련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2018년 법률은 헌법위원회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숙의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허위정보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법률안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2018년 법률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한 법이다. 이 법률은 허위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한 ‘개인’을 겨냥한 법률이 아니다. 2018년 1월 마크롱 대통령이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법률의 필요성을 제기할 당시, 프랑스 정부는 법률안에 개인에 대한 처벌을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최지선, 2018). 그 결과 개인에 대한 처벌 부분은 생략하고, 선거기간 동안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에 주목하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정보가 생산,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정부 기관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허위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포 그 자체와 생산과 유포 환경에 주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들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처벌이 강조된다고 볼 때, 만일 새로운 허위정보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서 개인의 처벌보다는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포에 주목하여 접근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연결하여 허위정보 규제 법률의 목적을 허위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법률을 통한 예방에 목적을 두고 법률 제정에 접근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법률은 처벌과 예방의 목적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2018년 법 역시 내용을 훑어보면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

업들에게 부과한 여러 의무사항을 보면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감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접하는 정보에 관해 정보 생산자, 출처, 비용 등 명확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2018년 12월 이후 2019년 유럽 의회 선거, 2020년 지방선거 등 두 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선거기간을 앞두고 허위정보 생산과 유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Bounemoura, 2020. 2. 1). 법률에서 미디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예방’의 목적이 뚜렷하다는 관점을 뒷받침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위정보의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법률 적용의 어려움, 여기에서 비롯되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의 문제가 남아 있고 법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법률의 목적이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의 목적도 고려한다면 이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론화를 통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위정보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보다 비판적으로 판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의 2018년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은 ‘선거기간’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허위정보의 문제점까지는 통제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를 갖는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함께 바이러스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백신의 위험성이나 효능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가 넘쳐나는 인포데믹(Infodemic)을 경험하고 있다. 사실 프랑스에서도 초반 법률안 제정 시기에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선거기간’에 한정지어 규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신종 바이러스와 백신접종, 치료약 개발 등을 둘러싼 허위정보들로 인한 문제점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인식으로 2020년 4월 시청각최고위원회(CSA)는 페이스북, 트위터, 스냅챗, 위키백과,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 코로나19 관련 콘텐츠 유통에 관한 공청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허위정보 문제의 차단을 위한 해법 역시 함께 고민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통로와 방식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 해법은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외 문헌자료

- 최지선 (2017). 프랑스 언론, ‘가짜뉴스’ 막기 위해 적극 노력. <신문과 방송> No.555. 108-111.
- 최지선 (2018). 문화부, ‘가짜 뉴스 근절법’ 추진 중. <신문과 방송> No.567. 102-105.
- Bem, A. (2019). La répression des fausses nouvelles ou fake news par la loi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Retrieve from <https://www.legavox.fr/blog/maitre-anthony-bem/repression-fausses-nouvelles-fake-news-24479.htm>
- Bounemoura, H. (2020. 2. 1). Municipales 2020 : Fake news, faux comptes, ingérence étrangère... Comment Facebook se mobilise pour les élections. *20minutes.fr*. Retrieve from <https://www.20minutes.fr/high-tech/2706367-20200201-municipales-2020-fake-news-faux-comptes-ingERENCE-etrangere-comment-facebook-mobilise-elections>
- Carasco, A. (2018. 11. 22). Les députés adoptent les textes controversés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La Croix*. Retrieve from <https://www.la-croix.com/Economie/Medias/deputes-adoptent-textes-controverses-contre-manipulation-linformation-2018-11-21-1200984518>
- Conseil Constitutionnel (2018). Décision n° 2018-773 DC du 20 décembre 2018. Retrieve from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decision/2018/2018773DC.htm>
- CSA (2020). Lutte contre la diffusion de fausses informations sur les plateformes en ligne: bilan de l’application et de l’effectivité des mesures mises en oeuvre par les opérateurs en 2019. Les collections CSA.
- Gouvernement.fr (2021. 6. 15).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Retrieve from <https://www.gouvernement.fr/action/contre-la-manipulation-de-l-information>
- Jublin, Mattieu (2019. 4. 6). "FAKE NEWS !" (1/5) - Loi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 un combat perdu d’avance ? *LCI.fr*. Retrieve from <https://www.lci.fr/population/fake-news-1-5-loi-contre-la-manipulation-de-l-information-un-combat-perdu-d-avance-2117268.html>
- Le Monde avec AFP (2021. 6. 2). La France va créer une agence nationale de

- lutte contre les manipulations de l'information. *Le Monde*. Retrieve from https://www.lemonde.fr/pixels/article/2021/06/02/la-france-va-creer-un-e-agence-nationale-de-lutte-contre-les-manipulations-de-l-information_6082561_4408996.html
- Mounier, J.L. (2019. 6. 19). Inefficace ou mal comprise, la loi contre les “fake news” toujours en question. *France24.com*. Retrieve from <https://www.france24.com/fr/20190619-france-loi-fake-news-efficacite-promulgation-lrem-macron-fausses-nouvelles-csa>
- Pierrat, E. (2019). Lutte contre les « Fake News » : Genèse, Objet, Critiques et Droit comparé. Retrieve from <https://www.revuedesjuristesdesciencespo.com/index.php/2019/12/26/lutte-contre-les-fake-news-genese-objet-critiques-et-droit-compare/>
- Rees, M. (2018. 11. 7). Le Sénat rejette encore la proposition de loi contre les «fake news». *Next Inpact*. Retrieve from <https://www.nextinpact.com/news/107108-le-senat-rejette-encore-proposition-loi-contre-les-fake-news.htm>
- Rees, M. (2019. 4. 3). Loi Fake News : Twitter refuse les campagnes politiques en France, dont celle du gouvernement. *Next Inpact*. Retrieve from <https://www.nextinpact.com/article/29291/107758-loi-fake-news-twitter-refuse-campagnes-politiques-en-france-dont-celle-gouvernement>
- Rees, M. (2019. 5. 22). « Attaque » de la Pitié : la fake news de Castaner échappe à la loi contre les fausses informations. *Next Inpact*. Retrieve from <https://www.nextinpact.com/article/29415/107897-attaque-pitie-fake-news-castaner-echappe-a-loi-contre-fausses-informations>
- Tribunal de grand instance de Paris (2019. 5. 17). Jugement rendu le mai 2019. N° RG 19/53935 – N°Portalis 352J-W-B7D-CPY60
- Unesco(n.d.) Le journalisme, « les fausses nouvelles » (fake news) et désinformation : un manuel pour l'enseignement et la formation du journalisme. Retrieve from <https://fr.unesco.org/fightfakenews>

법령

Code électoral (1964).

Code pénal (1994).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1789).

Décret n° 2019-53 du 30/01/2019 publié au JO du 31/01/2019 désignant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et la cour d'appel compétents pour connaître des actions fondées sur l'article L. 163-2 du code électoral (2019).

Décret n° 2019-297 du 10 avril 2019 relatif aux obligations d'information des opérateurs de plateforme en ligne assurant la promotion de contenus d'information se rattachant à un débat d'intérêt général (2019).

Loi sur la presse du 27 juillet 1849 (1849).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1881).

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2004).

Loi du 22 dé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2018).

〈부록〉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2018년 12월 22일 법 n° 2018-1202

제1호 선거법 개정을 위한 조항

제1조

I. - 선거법의 제1권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제L. 111조 이후에 제L. 11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재정립한다:

« 제L. 112조 - 제L. 163-1의 조항을 위반하는 모든 경우 1년 징역과 75,000유로의 벌금을 선고한다.

형법 제121-2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앞줄에 정의된 위반에 대해 형사법 상으로 책임이 있는 법인은 동법 제131-38조에 의해 명시된 방법에 따른 벌금, 제 131-39조 2°항과 9°항에 명시된 형벌에 처해진다. 이 조항의 2°에 언급된 금지사항은 최대 5년간 행해지며 직무 수행 중 또는 범법행위가 저질러졌을 때의 직업 활동에 대해 이루어진다. »

2° 제2호의 6장 초반에 다음 두 조항 제L. 163-1조와 제L. 163-2조를 삽입한다 :

제L. 163-1조 - 총선이 있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프랑스 영토에서 일정 접속수를 넘어서는 활동을 하는 사업자들을 포함하여 소비법 제L. 111-7조에서 의미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선거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명확히 정보를 전달한다는 공익과 선거의 진정성의 관점에서 다음을 준수한다 :

1° 사용자들에게 해당 플랫폼에 공익적 토론에 관련된 정보 콘텐츠를 게재하는 대신 댓가를 지불하는 개인의 신원 혹은 상호, 회사 소재지, 법인의 목적에 대해 올바르고,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 계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2° 공익적 토론과 관련된 정보 콘텐츠 게재의 일환으로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올바르고,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

3° 규정된 금액 기준을 넘어서는 정보콘텐츠 게재 대신 받은 댓가의 금액을 공개한다.

이 정보들은 전자 통로로, 공개된 형식으로, 이 조항의 첫째 줄에 명시된 기간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업데이트 되어 공중에게 공개된 기록으로 수집된다.

이 조항의 적용 방법은 시행령으로 명시된다.

« 제L. 163-2 조 - I. - 총선이 치러지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앞으로 다가올 선거의 진정성을 해칠 성격의 거짓된 정보가 인위적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고의적, 인위적으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대량 유포되는 경우, 검찰이나 모든 후보자, 모든 정당 또는 정치 단체, 모든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 판사는 초래된 피해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2004년 6월 21일 법 n° 2004-575 제6조의 1항 두 번째에서 명시된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 같은 조항 1항의 첫 번째에서 명시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유포를 멈추게 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II. - 담당 판사는 제소부터 48시간 이내에 의견을 공표한다.

상고의 경우, 법원은 제소부터 48시간 이내에 의견을 공표한다.

III. - 이 조항에 근거한 조치들은 시행령에 의해 결정된 법원과 항소법원에 전속 배정된다. »

제2조

I. - 선거법 제2권의 4호 5장의 초반에 다음과 같이 제L. 306를 작성하여 재정립한다. :

« 제L. 306.조 - 제L. 163-1조와 제L. 163-2조의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

II. - 선거법 제L. 327에 « L. 113 » 대신 « L. 112 »로 대체한다.

제3조

유럽의회 의원 선출에 관한 1977년 7월 7일 법 n° 77-729의 제 장 초반에 제14-2조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추가한다. :

« 제14-2조 - 선거법의제 L. 163-1조와 제L. 163-2조의 조항은 유럽의회 의원 선출에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

선거법 제L. 558-46조 1항에, 1° bis항을 작성하여 추가한다 :

« 제L. 163-1조와 L. 163-2조 1° bis항 ».

제2호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 수정을 위한 조항

제5조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 n° 86-1067의 제33-1조 1항에 다음 두 줄을 작성하여 보완한다. :

« 만약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이 인간의 존엄성, 타인의 자유와 재산, 표현과 생각과 의견의 다원성,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보호, 공공질서 유지, 국가 안보, 제도의 적법한 기능을 포

함한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위험을 포함하면 시청각최고위원회는 협약 체결을 시도하는 요구를 반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방송이 현행법을 어길 때에도 똑같이 할 수 있다.

« 상법 제233-3조의 의미로 외국의 정부에 의해 통제되거나 외국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법인에 의해 협약의 체결이 요청되는 경우, 시청각최고위원회는 요청을 검토하기 위해 요청자, 요청자의 자회사, 요청자 혹은 요청자의 자회사를 통제하는 법인이 편집하는 다른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다. »

제6조

동법 제33-1조 이후에 제 33-1-1조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추가한다. :

« 제33-1-1조 - 대통령 선거,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 선거, 유럽의회 대표 선거, 국민투표가 있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의 기간 동안 상법 제L.233-3조의 의미에서 외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거나 외국 정부의 영향 하에 있는 법인과 체결된 협약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다가올 선거의 진정성을 침해하는 성격의 거짓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는 경우 시청각최고위원회는 이 문제를 경고하거나 멈추도록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방법을 통해 투표 행위가 끝날 때까지 방송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

사실이 이 조항에 예고된 절차의 개시를 증명하였다고 평가되면, 위원회는 문제가 된 사람들에게 기소를 고지한다. 이 사람들은 고지부터 48시간 이내에 그들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공중과 행정간 관계에 관한 법 제L. 121-2조 1항과 2항에서 예고된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

« 이 조항에서 예고된 절차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은 관련자들과 프랑스에서 서비스 방송을 책임지고 중단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배급자 위성 사업자에게 고지된다. »

제7 bis

앞서 언급된 1986년 9월 30일 법 n° 86-1067 제42-1조의 1항에 다음을 작성한다 :

« 1° 서비스, 특정한 프로그램 항목, 프로그램의 일부분, 광고 시퀀스의 편집, 배급, 방송에 대한 중단은 최대 1개월로 한다 ; ».

제8조

동법 제42-5조 이후에, 제42-6조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재정립한다. :

« 제42-6. - 시청각최고위원회는, 협약을 목표로 하는 방송 서비스가 거짓된 뉴스를 유포함으로써 제도의 적법한 기능을 포함하여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최종 경고 이후에 상법 제L. 233-3조의 의미로 외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거나 외국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법인과 제33-1조를 적용하여 체결한 협약에 대해 일방적인 해지 처벌을 공표할 수 있다. 이

요소들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침해를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는 특히 협약을 체결한 회사, 회사의 자회사, 회사나 그 자회사를 통제하는 법인이 편집하는 전자커뮤니케이션의 다른 서비스의 콘텐츠를 검토할 수 있다. »

제9조

동법 제42-7조의 첫째 줄과 둘째 줄 첫 번째 문단에서 « 42-4조, » 다음에 « 42-6조 »를 추가한다.

제10조

동법 제42-10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1° 첫 번째 줄의 두 번째 문단에서 « 위성 » 단어 이후에 « 또는 서비스 배급자에 의해 »라는 단어들을 추가한다 ;

2° 첫 번째 줄 이후에 다음과 같은 줄을 작성하여 추가한다 :

« 이 서비스가 특히 거짓된 뉴스를 유포함으로써 제도의 적법한 기능을 포함하여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 요청은 특히 위성 네트워크 사업자 또는 상법 제L. 233-3조의 의미로 외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거나 외국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으며 프랑스 관할과 관계된 시청각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배급자에 의한 유포나 배급을 멈추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될 수 있다. 이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 판사는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한 회사와 자회사, 회사와 자회사를 통제하는 법인이 편집하는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다른 콘텐츠를 검토할 수 있다. »

II. - 행정법 제L. 553-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1° 첫째 줄에서 « 재생된 이 다음 »을 삭제한다 ;

2° 뒤의 세 줄을 삭제한다.

제3호

허위정보 유포 근절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 의무

제11조

I. - 선거법 제L. 163-1조의 첫째 줄에 명시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공질서를 교란하거나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 n° 86-1067 제33-1-1조의 첫째 줄에서 명시한 선거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는 허위정보의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조치를 시행한다. 사업자들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정보에 대해 특히, 정보가 제 3자를 대신하여 홍보된

콘텐츠에서 야기되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시적인 장치들을 마련한다.
또한, 다음에 대한 추가 조치들을 시행한다 :

- 1° 알고리즘의 투명성 ;
- 2° 언론사와 방송사에서 나온 콘텐츠를 홍보 ;
- 3° 허위정보를 대량으로 유포하는 계정 근절 ;
- 4° 사용자에게 공익적 토론에 관한 정보 콘텐츠를 게재하는 대신 댓가를 지불한 개인의 신원 또는 법인의 상호, 소재지, 목적에 대한 정보 제공;
- 5° 콘텐츠의 성격, 출처, 유포 방법에 대해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 ;
- 6° 미디어와 정보 교육.

이 조치들과 방법들은 공개한다. 각각의 사업자들은 매년 시청각최고위원회에 시행한 조치들의 방법을 명시한 선언문을 제출한다.

II. - 이 조항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왈리스 섬, 후투나 섬, 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남부와 남극지역에서도 적용된다.

제12조

앞서 언급된 1986년 9월 30일 법 n° 86-1067 제17-1조 이후에 제17-2조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추가한다 :

« 제17-2조. - 시청각최고위원회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이 법률의 제33-1-1조의 첫째 줄에 명시된 선거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짓 정보의 유포 근절에 기여한다.

필요한 경우, 선거법 제L. 163-1조의 첫째 줄에 명시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정보의 유포 예방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전달한다.

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보의 조작 근절에 관한 2018년 12월 22일 법 n° 2018-1202 제11조에서 명시된 조치를 취하는 의무를 따르도록 보장한다.

위원회는 적용과 효과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서를 발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이 법의 제19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사업자들로부터 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

제13조

선거법 제L. 163-1조의 첫째 줄에 명시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 호(titre)와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2004년 6월 21일 법 n° 2004-575의 제6조 1항 7의 세 번째 줄에서 예고된 내용의 적용을 위해 프랑스 영토에서 교섭상대 역할을 할 법적 대리인을 지정한다.

제14조

선거법 제L. 163-1조의 첫째 줄에 명시된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익적 토론에 관련된 정보 콘텐츠의 추천, 분류, 기준제시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운영에 대해 집계된 총체적 통계를 공개한다.

각각의 콘텐츠에 대해 다음을 언급한다 :

- 1° 추천, 분류, 기준제시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액세스한 부분 ;
- 2° 필요한 경우 플랫폼 내부의 검색 엔진 알고리즘이나 콘텐츠에 접근하는 데에 관여한 플랫폼의 추천, 분류, 기준제시 알고리즘에 귀속되는 간접적 액세스에 대한 부분.

이 통계들은 모든 사람들이 접근가능하도록 자유롭고 공개된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제15조

선거법 제L. 163-1조의 첫째 줄에 명시된 플랫폼 사업자들, 통신사 규제에 관한 1945년 11월 2일 명령 n° 45-2646에서 의미하는 통신사들, 언론의 법률적 제도 개혁에 관한 1986년 8월 1일 법 n° 86-897에서 의미하는 언론사 및 온라인 언론사,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 n° 86-1067에서 의미하는 시청각커뮤니케이션 방송사, 소비법에서 의미하는 광고주, 언론인 대표 조직, 허위정보 유포 근절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조직들은 허위정보 유포 근절에 관한 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호

미디어와 정보 교육에 관한 조항

제16조

교육법 제L. 312-1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 1° 첫째 줄 첫째 단락은 « , 인터넷 사용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용을 포함하여 »로 보완한다.
- 2° 마지막 두 번째 줄의 둘째 단락에서 « 방법들 » 뒤에 «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을 추가한다.

제17조

교육법 제L. 332-5조는 «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는 » 표현으로 보완한다. .

제18조

교육법 제L. 721-2조의 마지막 두 번째 줄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 1° 첫째 단락에서 « 문화 » 뒤에 « , 미디어와 정보 교육에 대한 »을 추가한다 ;
- 2° 둘째 단락에서 « 차별 » 뒤에 « , 정보의 조작에 »를 추가한다.

제19조

1986년 9월 30일 법 n° 86-1067의 제28조에서 3°항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재정립한다. :
« 3° 미디어와 정보에 관한 교육에 기여하는 적절한 조치들 ».

제5호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제20조

I. - 선거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1° 제L. 388조의 첫 줄에서 « 정치생활에서의 신뢰를 위한 2017년 9월 15일 법 loi n° 2017-1339 » 대신 «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2018년 12월 22일 법 n° 2018-1202 »으로 대체한다;

2° 제L. 395조에서 « 선거에서 후보자 제출 절차에 관한 2018년 1월 31일 법 loi n° 2018-51 » 대신에 «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2018년 12월 22일 법 n° 2018-1202 »으로 대체한다 ;

3° 제L. 439조에서 « 선거에서 후보자 제출 절차에 관한 2018년 1월 31일 법 loi n° 2018-51 » 대신 «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2018년 12월 22일 법 n° 2018-1202 »으로 대체한다.

II. - 선거법 제L. 558-46조의 1° bis의 내용들은 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왈리스와 후투나 섬에서 적용된다.

III. - 교육법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1° 제L. 371-1조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보완한다. :

« 제L. 312-15조와 L. 332-5조는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2018년 12월 22일 법 n° 2018-1202에 근거하여 적용될 수 있다. » ;

2° 제L. 771-1조, L. 773-1조와 제L. 774-1조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보완한다. :

« 제L. 721-2조는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2018년 12월 22일 법 n° 2018-1202에 근거하여 적용될 수 있다. »

IV. - 유럽의회 의원 선출에 관한 1977년 7월 7일 법 n° 77-729의 제26조 첫째 줄 마지막에서 « 작성 » 단어 뒤에 «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2018년 12월 22일 법 n° 2018-1202에 기인한 »으로 작성한다.

V. -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 n° 86-1067의 제108조에서 « 해외영토의 실질적 평등과 사회와 경제에 관한 기타 조항들에 관한 2017년 2월 28일 편성법 n° 2017-256 » 대신 « 정보 조작 근절에 관한 2018년 12월 22일 법 n° 2018-1202 »으로 대체한다.

VI. - 이 법의 제13, 14, 15조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왈리스와 후투나 섬, 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남부와 남극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은 국가의 법으로 시행될 것이다.